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9.17. 이홍민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19.9.17.
다. 상정일자: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9.9.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김기석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리예술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 시 공연활동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거리예술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공연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등 피해 예방 및 공연 제한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동 조례안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거리공연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여 많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함.
- 특히, 지난 2015년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버스킹 존(Busking Zone)을 지정한 이후 전국의 예술가의 공연을 유치하는 등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음.

참고자료 1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현황>

- 위 치 : 마포구 어울마당로 107~155-1
- 규 모 : 5개 구역 / [폭] 15~45m, [길이] 500m



A구역 (버스킹존)	B구역 (야외전시존)	C구역 (광장무대)	D구역 (여행무대)	E구역 (만남의 광장)
5개 공간	야외전시 공간	버스킹, 공공캠페인 공간		만남의 광장

- 그러나, 거리공연 특성상 공연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다수의 관객이 모이는 관계로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개정안 제6조(거리예술가 준수사항)제2항에 주민의 소음 등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거리예술가의 활동시간·장소와 공연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 검토 의견

- 아래 참고자료 2 <사용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거리공연 횟수가 2015년 189건에서 2018년 4,69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음, 통행불편 등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건에서 75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흥익지구대 접수 건은 2019년 한 해에만 3,000여 건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자료 3 <민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연문화 육성을 위해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공연 제한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동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거리예술의 활동 시간 및 장소 제한 조항의 신설로 인해 거리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거리공연 일정, 허가 시간, 공연 책임자 등 공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2 <사용 승인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승인건수	189	137	1,159	4,695
운영장소	2개소	2개소	4개소	4개소

※ 홍대 걷고싶은 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공사 : '16.10.~'17.6.(공연장 사용불가)

참고자료 3 <민원 현황(2015년 ~ 2019년 현재)> *유선민원 제외

접수기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관광과	12건	15건	31건	53건	75건
홍익지구대		▶ 홍대 관련 소음신고 최근 1년간 총 3,010건 ⇒ 22:00~06:00, 2,138건, 71% 차지 ⇒ 소음신고 통고처분(인근소란 등) 37건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관련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